“2026년 경기도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

『AI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AI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AI 모델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AI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I 모델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모집개요

1. **선정규모** : 20개사

2. **지원자격** : 도내 AI 분야 중소기업·스타트업·(예비)창업자

   - 도내 기업 : 도내 본사, 부설연구소, 지사, 지점, 공장 등 보유기업

3.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 지원 (총 600백만원)

4. **지원기간** : 협약일 ~ 2026년 11월 말

5. **지원내용** : AI 서비스 및 솔루션 개발을 위한 HW/SW/GPU/CLOUD 등 구매 및 임차, 사용 비용 직접 지원 * 세부 내역은 지원금 활용 분야 참고

2 지원내용

1. **지원 세부 내용**

   ○ 지원 사업비 : 총 20개사, 최대 3,000만원 한도 내 자금 직접 지원

   ○ 최종 선정 기업은 '경기도 AI 멤버십' 자동 가입

2. 지원금 지급 방법 : 1·2차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의 50% 선금 지급(5월 중)

○ (2차)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등급별(A · B · C · 부적정) 차등 지급(9월 경)

등급	판정기준	2차 지급액	총지급액	비고
A	목표대비 70% 이상 달성, 정상 진행	1,500만원	3,000만원	
B	목표대비 50% 이상 70% 미만, 보완 가능	500만원	2,000만원	전문가 연계 컨설팅 등 집중 모니터링
C	목표대비 50% 미만, 달성 곤란	미지급	1,500만원	
부적정	허위집행 · 목적외 사용 확인	1차지급금 전액 환수	-	전액 환수 및 경과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3. 기술개발 지원금 활용 분야

○ 기술개발에 활용되는 직접비 성격의 항목만 지원 가능*

* 기재된 항목 외의 사용은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인정 가능항목(안)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인프라 조성·구매)	•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서비스)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매·임차료 (GPU, SW 등)	•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를 임차하는 비용
소프트웨어 개발·활용비	• 소프트웨어 개발 및 라이센스 계약, 이용 비용 등 *단 지원기간 내 사용계약 체결 및 종료하는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비	• 클라우드(AWS, 네이버 등) 사용 비용 등
무형자산 취득비 (특허권 등)	• 사업계획서 상의 기술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 재산권 등의 출원, 등록 관련 비용
데이터 가공 및 취득비	• 이미지 라벨링, 로그 데이터 정제, 비정형 데이터의 정형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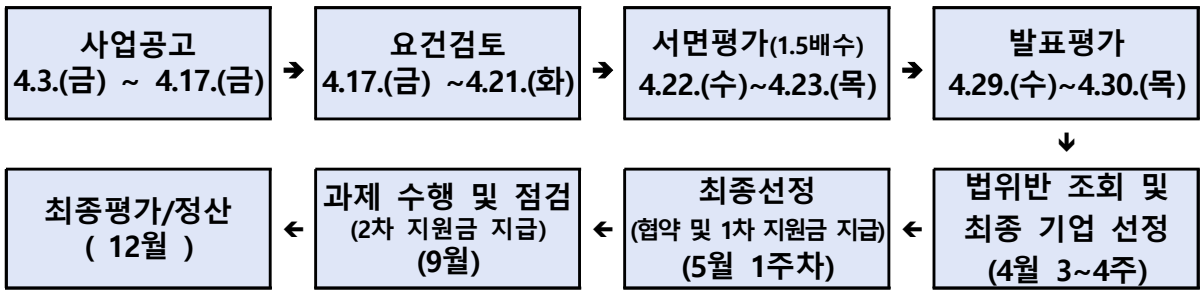
○ 인정 불가항목(안)

비 목	비목 정의
외주용역비	•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인건비	• 소속 직원이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여비	•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국내·외 여비
교육훈련비	• 임직원이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비용
광고선전비	• 기술개발에 따른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SNS 채널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소모품비	• 사무용품비, 사무실 환경유지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개인 기호품 등
사무실 임대료	• 아이템 개발 등을 위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
기술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 밖의 비용	• 신문구독료, 피복비, 주유비, 과태료, 회의비 등 개인 또는 운영비 성격의 경비

※ 상기 항목 외 집행 내용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비목 조정 가능

3 선정 절차 및 접수방법

1.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년 4월 3일 (금) ~ 4월 17일 (금), 15:00까지

3. 접수방법 : 경기기업비서 (www.egbiz.or.kr) 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접수 권장
- 접수 마감 시간(15시) 이후 접수분은 인정 불가

경기기업비서 신청서 접수 방법

①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로그인
② 경기기업비서에서 “공고명” 검색 ⇒ 공고문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③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지원사업 접수’ 버튼을 통해 정상적으로 접수 신청
④ (상단) 나의 지원사업 > 나의활동관리 > 나의 사업현황에서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

※ 신청서 수정은 제출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신중히 검토한 뒤 진행

※ 제출 후 수정을 원하는 경우 ‘접수취소요청’ 제출 후 관리자가 승인 후 재신청 가능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선정 절차

○ **(선정방법)** 공고를 통한 과제 사업계획서 접수 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과제 선정

○ **(선정기준)**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출하여 60점 이상 기업 고득점순 선정

※ 선정평가 기준은 [참고] 참조

※ 총점 60점 이상인 기업 중 선정된 기업을 제외한 0.5배수 내외 기업은 예비후보로 선정

○ **(선정절차)** 요건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최종 선정

- **(1단계) 요건검토**

· 사업공고 시 요구한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 신청자격,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 제한 여부(부당지원 등) 등 확인

- **(2단계) 서면평가(1차 평가, 1.5배수 선정)**

· 요건검토 통과 과제에 한하여,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지원과제 수 1.5배수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발표평가 및 사업비 적절성 평가(2차 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 발표평가**(발표 10분 + 질의응답 10분)**를 진행하여 선정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의 과제 고득점순에 따라 총 20개 과제 선정

· 평가위원 및 회계 전문가(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사업비 품목의 누락, 계상 오류, 예산항목의 적정한 배치 등 사업비 적절성을 평가

· 기업별 과제 총괄책임자(또는 참여인력) 1인 PT 발표 진행

· 참여장 배석은 컨소시엄별 3인까지 허용(계획안 내 기재된 참여인력)

- **(결과발표)** 단계별 결과발표는 참여기업에 결과 공문(또는 메일) 발송

- **(협약체결)** 과제 상호 검토·협의 후 최종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협약체결

5. 우대기준

연번	우대항목	제출증빙서류	배점
1	경기 AI 클러스터 입주(예정) 기업	- 협약서 사본 1부.	5
2	경기도 AI 멤버십 기업	- 경기도 AI 멤버십 기업 선정 공문	5
3	여성·사회적·장애인기업	- 여성·사회적·장애인기업 확인서 등	2

※ 우대점수는 발표평가 선정평가위원회 최종 점수에 가산(최대 5점 이내)

6. 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	서식 및 참고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3	과제 참여의사 확약서 1부.	『별지 제3-1호』
4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1부.	『별지 제3-2호』
5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 국세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가능	**공고일 (2026.04.03.)** 이후 발급분
6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최근('25년 귀속분)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 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영리기관(기업)에 한함
7	4대 보험가입 증명서 1부.	**공고일 (2026.04.03.)** 이후 발급분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유효기간 확인** 必	**공고 마감일 (2026.04.17)** 기준 유효 확인 必
9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영리기관(기업)·법인사업자만 해당	**공고일 (2026.04.03.)** 이후 발급분
10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 경기도 내 '주사무소' 미설치, '등록공장' 설치·운영하는 경우 제출 필수	**공고일 (2026.04.03.)** 이후 발급분
11	신용상태·정보제공·거래내역 조회 동의서 1부.	『별지 제3-3호』
12	경기도 AI 모델 기술개발 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1부.	『별지 제3-4호』
13	경기도 AI 모델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3-5호』
14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3-6호』
15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별지 제3-7호』
16	법위반 이의 및 구제 신청서**(해당 시)**	『별지 제3-7-1호』
17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소정양식, 『서식8』참조) **(해당 시)** **※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고시(경기도 고시 제2026-8호)에 따른 법 위반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한하여 미제출시 감점 20% 적용([별첨3] 참조)**	『별지 제3-7-2호』
18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1부.	『별지 제3-8호』
19	경기도 AI 모델 기술개발 지원사업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3-9호』
20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산점 증빙 서류 각 1부. **(해당 시)** **경기 AI 클러스터 입주(예정) 기업 - 협약서 사본** **경기도 AI 멤버십 기업 - 경기도 AI 멤버십 기업 선정 공문** **여성·사회적·장애인기업 - 여성·사회적·장애인기업 확인서 등**	
21	기타 성과 증빙 서류 각 1부. (해당 시) ※ 지적 재산권 등 보유 기술 및 역량 관련 증빙서류 사본 ※ 중소기업 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뿌리기업 인증서 등 ※ 대용량 파일은 업로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용량 주의	

4 선정평가 기준

❑ 1차 평가(서면평가) 기준(100점 만점, 1.5배수 선정)

평가 구분	평가 항목 및 기준	배점
기술성 (40)	ㅇ AI 기술의 혁신성 · 차별성 - 기존 기술 대비 차별점이 명확히 제시되었는가(유사 서비스 · 솔루션과의 비교 기술 여부)	25
	ㅇ 기술 개발 목표 구체성 - 목표 · 성과지표가 수치로 제시되었는가(정성적 기술만 있는 경우 감점)	15
사업성 (35)	ㅇ 시장 수요 및 사업화 가능성 - 타깃 시장 고객이 명확하게 정의되었는가(시장 규모 또는 수요근거 제시 여부)	20
	ㅇ 개발 결과물 활용 계획 - 개발 후 실제 적용 · 사업화 방안이 구체적인가	15
계획 적절성 (25)	ㅇ 지원금 사용계획 적정성 - 직접비 항목이 개발 과제와 연계되는가(인건비·간접비 포함 여부, 항목별 근거)	15
	ㅇ 개발 일정 현실성 - 연내 완료 가능한 일정으로 구성되었는가(마일스톤 단계 구분 여부)	10
합 계		100

❑ 2차 평가(발표평가) 기준(100점 만점, 가점 추가 반영)

평가 구분	평가 항목 및 기준	배점
실현 가능성 (40)	ㅇ 기술 개발 완료 가능성 - 현재 기술 수준 · 준비 상태가 개발목표와 부합하는가 (데모, 프로토타입, 기술검토 자료 등 확인)	25
	ㅇ 일정 · 예산 실행력 - 구체적 실행 계획 및 리스크 대응 방안을 보유하고 있는가	15
사업 역량 (35)	ㅇ 대표자 · 핵심인력 전문성 - AI 기술 관련 경력 · 역량이 충분한가(관력 학력 · 경력 · 수행 프로젝트 이력)	20
	ㅇ 팀 구성 적절성 - 팀내 개발 과제수행에 필요한 역할이 갖춰졌는가(예비창업자의 경우 협력자 포함 여부)	15
성과 계획(25)	ㅇ 성과지표 달성 의지 - 중간 · 최종 목표에 대한 달성 의지와 계획이 명확한가(발표 태도 · 질의응답 성실성 포함)	15
	ㅇ 사업화 연계 구체성 - 개발완료 후 실제 적용 · 출시 계획이 구체적인가 (잠재 고객, 파트너십, 후속 투자계획 등)	10
합 계		100

❑ 최종점수 산출

○ 최종점수 = 2차 평가 점수 + 가점

※ 각 항목별 평가점수는 배점의 60% 미만 부여 시 사유 기재 필수

5 참여기업 의무 및 유의사항

1. 참여기업 의무사항

가. 참여기업은 협약서, 사무편람 등을 준수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사업비 선 지급 시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협약 중지
- 이행보증보험비는 자체 부담하며, 보증기간은 총 사업기간 + 6개월

나. 참여기업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다. 참여기업은 사업화 자금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 서류와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라. 참여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사무편람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마.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존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 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필요시)
- 본 사업 내 중간 진도점검 및 최종평가, 성과공유회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2. 참여기업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경과원 기업 지원 사업 운영규정(별첨2)'과 '사무편람',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사업관리지침 · 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며, 공고문에 고시된 내용 우선 적용함

나. 중간점검 결과 부적정 판정(허위집행 · 목적외 사용) 또는 최종평가 시 고의 · 부정에 의한 사업목표 미완료가 확인된 경우, 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사유의 정당성 · 고의성 · 불가항력성 등을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비 환수 및 제재할 수 있음

(단, 중간점검 A·B·C등급에 의한 차등 지급은 본 조항과 별개로 운용됨)

다.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할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 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본 사업 사무편람 참조

- 고의로 사업화 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및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및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 자료(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각종 창업 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라. 본 사업 참여 중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 지원 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할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마. 법 위반 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안내

1)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고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2)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제한조건은 1회 이상 법 위반 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 총점에서 20% 감점 적용

3)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고시(경기도 고시 제2026-8호)에 따른 법 위반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한하여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제출시 감점 20% 미적용([별첨3] 참조)

3. 지원 제한사항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이미 개발했거나 이미 지원받은 과제와의 중복성
- 타 사업 수행 : 동일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실증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행 중 :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제품·서비스를 개발 중인 경우(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단, 시효소멸자는 제외)

4. 과제 선정 취소 사항

○ 한 기업이 여러 건의 사업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사업목적과 과제계획서 주제·내용 상이한 경우
-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선행 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 개발·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업의 귀책 사유로 협약 추진이 지연되어 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클러스터팀 한재윤 대리, 박수경 대리

☏ 031-776-4829, 4824 ✉ jyhan@gbsa.or.kr, sukyung23@gbsa.or.kr

※ [참고] 별첨 자료
1. 지원 제외(취소) 대상 및 업종
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3.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별첨 1] 지원 제외(취소) 대상

“2026년 경기도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
『AI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지원제외 대상 및 업종

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② 기업의 자격이 맞지 않거나, 사업내용이 사업의 기본 목적 및 공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자

③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④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동일(유사 포함) 과제로 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 중인 자 또는 협약 체결 이전 및 종료 1개월 이내에서 타 지원 사업과의 협약을 체결하는 자

* 단, 타 지원사업과의 협약 체결 시 본 지원 사업과 협약 체결 중복 기간 내에 타 지원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⑤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현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 지원 사업 등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⑥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⑦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⑧ 지원 제외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참조)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제외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무도유흥주점업	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법	91249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⑨ 「기타 : 기업 지원 사업의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 적용

- 근거 : 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 지원 제한 조례 제6조(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
- 내용 : 도 기업 지원 사업 대상 11개 법률*(2년 이내) 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사업 참여 제한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 관리법, 대기 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 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지방세 기본법

[별첨 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 2010.10.21. 규정 제 160호)

제12조(지원수혜자의 부당행위처리) ①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지원수혜자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한 후, 즉시 지원액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수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사법기관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담당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2. 지원사업비 부당수취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부당한 행위 또는 형법상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 경우
4. 위법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기관의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법·부당행위의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당수취액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2.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4. 그 밖에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고발의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범죄행위의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다.

⑤ 고발은 원장 명의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당지원수혜자 제재)

①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지원수혜자에 대하여는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5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가.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나.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다.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라. 그 밖에 행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영구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재의 시점은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확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별첨 3]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6-8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8.
경 기 도 지 사

1.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3.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 제외
   가. 제외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 · 유예사업
      1) (계도 · 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2) (사업운영비 · 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 · 다수기업 지원사업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4) (자금 · 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5) (시 · 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사실 적용 11개 법률 중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붙임 1)에 대하여 조건부 적용 유예
   다.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 · 사업 특성에 따라 지침 · 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확정 판결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 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 · 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서식4) 제출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미적용
   - 단,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 · 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다.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 :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처분내역 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조회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도 · 시군 조회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확인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서식3) 제출
   -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 (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

9.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2)

10. 고시 효력일 : 고시일 ~ 차기 고시일 전까지

11.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 031-8030-2992)